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2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전진숙·박해철·민형배

박 정・김남희・이정문

윤후덕 • 박균택 • 정준호

김선민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법률 제 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생 략)	제3조(처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2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	
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	
(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	
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	
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	
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	
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	
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	
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 략) <u><신 설></u>

1. ~ 12. (현행과 같음)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